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의 기초 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 다양한 연금가입 니즈에 대응 가능한 4가지 연금형태
 - 종신연금형 : 연금수령으로 평생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고 조기사망시에도 20년 또는 100세까지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
 - 상속연금형 : 생존시 이자수익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사망시 연금재원으로 유가족의 상속자금 마련
 - 확정기간연금형 : 원하는 기간(5, 10, 15, 20년) 동안 연금수령하여 노후소득으로 활용 가능
 - 더블연금형 : 연금개시 후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2등급 이내) 중 최초 진단시 연금액이 두배로 증가

- 보장과 연금의 결합, 더블연금형 제공
 - 기본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2등급 이내) 진단시에는 더블연금으로 치료비 사용 가능

- 더블연금은 연금개시 전이나 수령 중에 언제든지 잔여 미지급된 연금액을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한 일시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고액 치료비로 사용 가능
- 고수의 재테크 활용 상품 : 실세금리를 반영한 높은 금리로 부리적립(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 최저보증)하므로 여유자금의 운용이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으로도 적합
- 세테크기회 제공 :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충족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류 : 일반연금(종신.상속.확정기간.더블연금형)

■ 보험기간

구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보증)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확정기간연금형 (5,10,15,20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더블 연금형	기본연금 (20년 보증)		더블연금 지급개시일 ~ 최종더블연금 지급일
	더블연금 (20년 확정)	※ 더블연금 발생기준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연금개시나이,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A)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45~75세	0 ~(A-5세)	일시납 5,7,10,15,20년납	일시납 월납
더블연금형	45~70세			

주)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 보험료 납입한도액 (단위 : 만 원)

가입나이	종신.상속.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		
	일시납	월납		일시납	월납	
		5,7년납	10,15,20년납		5,7년납	10,15,20년납
20세미만	500~4,000	10~40	5~20	500~4,000	10~40	5~20
20~29세	500~6,000	10~60	5~30	500~6,000	10~60	5~25
30~39세	500~8,000	10~80	5~40	500~7,000	10~80	5~30
40~49세	500~10,000	10~100	5~50	500~7,500	10~90	5~35
50세이상	500~10,000	10~120	5~50	500~8,500	10~100	5~40

주) 일시납은 100만 원 단위, 월납은 1천 원 단위로 가입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제 1 보험기간	재해장해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	일시납 보험료의 20% × 해당 장애지급률
				월 납	월납 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애지급률
제 2 보험기간	새끼보험금	종신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상속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더블연금금	기본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더블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 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확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기본연금 지급일부터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매년 지급 (20년 확정)		

주) 1.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5.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 및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 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10. 약관 제5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 따라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2.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13.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4.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이 내의 친척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

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 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금지급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은 해당 질병진단서 ■ 장기요양상태시는 장기요양 인정서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망시	○	○	○	
진단시	○	○	○	
장해시	○	○	○	
해약시	○	○		
환급금대출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당해연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개인연금사망률 기준 : 40세 가입)

구분		20세	40세	60세
개인연금사망률	남자	-	0.000770	0.001640
	여자	-	0.000480	0.000560
재해장해발생지급률	남자	0.000205	0.000326	0.000570
	여자	0.000083	0.000153	0.000512
암발생률	남자	0.000322	0.002228	0.008792
	여자	0.000606	0.004986	0.007354
뇌출혈발생률	남자	0.000068	0.000331	0.000847
	여자	0.000044	0.000203	0.000661
급성심근경색증발생률	남자	0.000015	0.000462	0.001803
	여자	0.000006	0.000030	0.000288
요양(1~2등급)발생률	남자	0.000004	0.000038	0.000431
	여자	0.000000	0.000013	0.000360

③ 적용이율

적용이율이란 체신관서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는 신공시이율IV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의 신공시이율IV가 변동될 경우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④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 등이 하락하여도 체신관서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504는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신공시이율IV(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 일시납

(단위 : 원)

경과기간 \ 보험료	10,000,000		20,000,00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0,000,000	10,076,960	20,000,000	20,153,930
3년	10,000,000	10,452,840	20,000,000	20,905,680
5년	10,000,000	10,881,690	20,000,000	21,763,390
7년	10,000,000	11,334,900	20,000,000	22,669,800
10년	10,000,000	12,063,410	20,000,000	24,126,830
15년	10,000,000	13,420,100	20,000,000	26,840,210
20년	10,000,000	14,977,670	20,000,000	29,955,340

■ 월납

(기준 : 20년납, 단위 : 원)

경과기간 \ 보험료	100,000		200,00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200,000	955,510	2,400,000	1,923,200
3년	3,600,000	3,381,780	7,200,000	6,801,150
5년	6,000,000	5,941,060	12,000,000	11,946,550
7년	8,400,000	8,556,900	16,800,000	17,206,580
10년	12,000,000	12,867,000	24,000,000	25,872,380
15년	18,000,000	21,020,650	36,000,000	42,264,580
20년	24,000,000	30,381,550	48,000,000	61,083,860

주) 위 해약환급금은 신공시이율Ⅳ가 2.80%로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신공시이율Ⅳ 및 보험료 납입일 등이 변경되면 상기금액도 달라집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수수료 안내표)

○ 기본비용 및 수수료

■ 일시납 (기준 : 보험료 1,000만 원, 남자 40세, 60세연금개시)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5차월 이내: 보험료의 0.1% (10,000원) 15차월 초과: 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보험료의 0.07%~0.07% (6,583원~6,613원)
	위험보험료	매월	보험료의 0.0005%~0.0008% (54원~84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공제비용	해지시	해당사항 없음

주) 위험보험료 : 가입시점~연금지급개시전까지

■ 월납 (기준 : 보험료 10만 원, 남자 40세, 60세연금개시, 20년납)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판매 보수 10년 이내 : 보험료의 1.97% (1,973원) 10년 초과 : 0% (0원)
			유지 보수 7년 이내 : 보험료의 2.80% (2,800원) 7년 초과 : 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보험료의 2.92%~2.95% (2,916원~2,946원)
	위험보험료	매월	보험료의 0.05%~0.08% (54원~84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공제비용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주) 위험보험료 : 가입시점~연금지급개시전까지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
해지공제금액(만 원)	16.8	12.6	8.4	4.2	0	0
해지공제비율(%)	14.0	5.3	2.3	0.9	0	0

주)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